

■ 국가배상법 시행령 [별표 7] <개정 1998.2.19>

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(제6조제1항관련)

구 분	생활비 비율표
부양가족이 없는 자	35퍼센트
부양가족이 있는 자	30퍼센트